#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4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권향엽·김문수·이병진

박지원 • 정동영 • 이수진

윤준병 • 민병덕 • 김영호

한창민 · 허성무 · 문진석

윤종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 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징역"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징역"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생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	②		
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			
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			
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			
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u>징</u>		
<u>징역</u> 에 처한다.	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			
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			
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u>징</u>			
<u>역에</u>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		
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	<u>원 이하의 벌금</u>		
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